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89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김미애・이만희・백종헌

김선교 • 곽규택 • 고동진

서명옥 · 서지영 · 주진우

이인선 • 안상훈 • 권영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근로 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 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보호자의 돌봄 필요성이 더욱 큰 시기인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%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,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 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(안 제76조의3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8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"지급에"를 "지급,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 직등 급여의 지급에"로 한다.

제5장제2절의 제목 중 "등"을 "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 한다.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3(가족돌봄휴직·휴가 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 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(이하 "가족돌봄휴직등"이라 한다)를 부 여받은 피보험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 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등 급 여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 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돌봄휴직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 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등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는 가족돌봄휴직등 시작일 당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피보험자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.
- ⑤ 그 밖에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77조제1항 전단 중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"를 "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"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으로"를 ""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"로, "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"로"를 "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등"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) ① 제7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족돌봄휴직등을 사용 중인 근로자부터

적용한다.

② 제76조의3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가족돌봄휴직등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부터 가족돌봄휴직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보험료) ① (생 략)	제6조(보험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	2
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	
고용안정・직업능력개발 사업	
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	
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	
용에 충당한다. 다만, 실업급여	
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	
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,	
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	
급여의 지급, 제73조의2제1항에	
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	
여의 지급, 제75조·제76조의2	
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	
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	
른 출산전후급여등의 <u>지급에</u>	지급, 제76
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	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
	급여의 지급에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<u>등</u>	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<u>등 및</u>
	가족돌봄휴직등 급여
<u><신 설></u>	제76조의3(가족돌봄휴직·휴가

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(이하 "가족돌봄휴지등"이라 한다)를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등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돌봄휴직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직등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신청

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급 여등의 반환명령, 사실 확인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 의-----조.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 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 여"는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" 아휴직"은 각각 "출산전후휴가, 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---유산・사산휴가 또는 배우자

을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등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 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등 급여는 가족돌봄휴직등 시 작일 당시 「근로기준법」 제2 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피보험자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하다. ⑤ 그 밖에 가족돌봄휴직등 급 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<u>로 정한다.</u> 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급 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으로, 제71조 및 제73조 중 "육 ----- '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

출산휴가"로 본다.	
	산・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
	또는 가족돌봄휴직등"으로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